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I. 제안이유

-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 II. 주요내용

- 2022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7개 기금 13,6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5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sup>㉠</sup>	2022년 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sup>㉡</sup> $d=a+b-c$	증 감 <sup>㉢</sup> $e=d-a$
		수입 <sup>㉣</sup> b	지출 <sup>㉤</sup> c		
합 계(7건)	14,589,954	4,107,352	5,061,061	13,636,245	△953,7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45,001	34,540	871,639	4,607,902	△837,099
평창군 자활기금	0	250,562	30,000	220,562	220,562
체육진흥기금	3,333,091	523,543	845,000	3,011,634	△321,457
식품진흥기금	142,250	27,587	30,422	139,415	△2,835
재난관리기금	1,258,811	1,011,581	1,200,000	1,070,392	△188,419
옥외광고발전기금	121,458	18,085	0	139,543	18,085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4,289,343	2,241,454	2,084,000	4,446,797	157,454

### Ⅲ. 기금개요

####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3,6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54백만원** 감소.

#### □ 기금운용계획총괄

- 2022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총 **9,697백만원**이며
  - 수입은 전입금 3,750백만원, 보조금 19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634백만원, 예치금회수 3,956백만원, 이자수입 103백만원, 기타수입 235백만원이며,
  - 세출은 비용자성사업비 4,164백만원, 용자성사업비 25백만원, 예치금 4,636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72백만원 임.

#### □ 기금별 운용계획

##### 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실)

-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용자(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979,541</b>	<b>합 계</b>	<b>979,541</b>
예탁금원금회수	802,485	예치금	107,902
예치금회수	142,516	예수금원금상환	831,540
이자수입	34,540	예수금이자상환	40,099

- ▶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802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143백만원**, 이자수입 **35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0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72백만원** 임.

나. 평창군자활기금(복지정책과)

○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촉진(2022년 설치,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250,562</b>	<b>합 계</b>	<b>250,562</b>
전입금	250,000	비융자성사업비	5,000
이자수입	562	융자성사업비	25,000
		예치금	220,562

- ▶ 수입은 전입금 250백만원, 이자수입 56만원이며
- ▶ 지출은 사업자금대여 15백만원, 자활성공수당 지원 4백만원, 자활조성자금 대여 1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예치금 221백만원 임.

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교육체육과)

○ 설치목적 : 평창군 체육진흥 (존속기한 2023.10.16.)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856,634</b>	<b>합 계</b>	<b>1,856,634</b>
전입금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845,000
예탁금원금회수	805,290	예치금	1,011,634
예치금회수	527,801		
이자수입	23,543		

- ▶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805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528백만원, 이자수입 24백만원이며
- ▶ 지출은 전국바둑대회 60백만원, 도단위 불링대회 20백만원,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 50백만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80백만원, 평창 전국 풋살대회 35백만원, 평창군수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100백만원,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200백만원,  
 청소년풋살대회 50백만원, JS컵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 120백만원,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사 시상식 30백만원,  
 예치금 1,012백만원 임.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환경위생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69,837</b>	<b>합 계</b>	<b>169,837</b>
보조금	18,800	비용자성사업비	30,422
예탁금원금회수	26,250	예치금	139,415
예치금회수	116,000		
이자수입	787		
기타수입	8,000		

- ▶ 수입은 보조금 19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26백만원,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16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과징금 8백만원 임.
- ▶ 지출은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외 4개 사업에 27백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3백만원, 예치금 139백만원 임.

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안전교통과)

○ 설치목적 :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2,270,392</b>	<b>합 계</b>	<b>2,270,392</b>
전입금	1,000,000	비용자성사업비	1,200,000
예치금회수	1,258,811	예치금	1,070,392
이자수입	11,581		

▶ 수입은 전입금 1,000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1,259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이며

▶ 지출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소모성물품구입 300백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00백만원, 재난·재해예방사업 400백만원, 부착제설기 구입 100백만원, 예치금 1,070백만원 임.

바.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39,543</b>	<b>합 계</b>	<b>139,543</b>
예치금회수	121,458	예치금	139,543
이자수입	961		
기타수입	17,124		

▶ 수입은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121백만원, 신고수수료 17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이며,

▶ 지출은 예치금 139백만원임.

사.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유통산업과)

○ 설치목적 :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4,030,797</b>	<b>합 계</b>	<b>4,030,797</b>
전입금	2,000,000	비용자성사업비	2,084,000
예치금회수	1,789,343	예치금	1,946,797
이자수입	31,454		
기타수입	210,000		

▶ 수입은 전입금 2,000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1,789백만원, 이자수입 31백만원,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10백만원이며

▶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2,084백만원, 예치금 1,947백만원 임.

IV.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54백만원이 감소한 13,636백만원 임.

○ 2022년도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08백만원
- 평창군자활기금 221백만원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012백만원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39백만원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070백만원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39백만원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447백만원임.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9,697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956백만원(40.8%), 전입금이 3,750백만원(38.6%), 예탁금 원금회수가 1,634백만원(16.8%), 기타수입이 235백만원(2.4%), 이자수입 103백만원(1.1%), 보조금이 19백만원(0.19%) 이며,
- 지출은 예치금이 4,636백만원(47.8%), 자활성공수단지원 등 2건의 자활사업 전국바둑대회 지원 등 10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등 5건의 식품진흥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비용자성사업비가 4,164백만원(42.9%), 예수금원리금상환이 872백만원(9%), 자활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사업비가 25백만원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년도(2021년)까지 존속했던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 ▶ 2021년 12월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이 해제되어 기금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2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평창군자활기금의 경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에 따라
- ▶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21.11.5일 제정하고 기금 조성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의 경우

- ▶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2021.5.7. 조례개정)
- ▶ 2022년도 말 조성액(3,012백만원) 대비 기금사업비(845백만원)는 28%를 차지하고 있어 걱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 ▶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군 출연금 외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